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년 4월 7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라. 상정일자: 2026년 4월 16일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사회복지국장 황 은 채

나. 제안이유

- 1) 노인 건강 증진 및 노인복지 증진,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 필요
- 2) 노인 건강 유지 및 복지의 일환으로 경로식당의 공공성이 강조되며 민간의 전문적인 식당 운영의 기술을 기반으로 경로식당 운영의 경제성·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바,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위탁사무 :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가)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시설의 운영)
- 3) 위탁시설
 - 가) 소재지
 - (1) 구미본관 : 구미시 산책길 51
 - (2) 선산분관 : 구미시 선산중앙로 117
 - 나) 규모 및 지원시설
 - (1) 본관 : 284.66㎡(식당 168.5㎡, 주방 84.9㎡, 다용도실 31.26㎡)
 - (2) 분관 : 246.7㎡(식당 120㎡, 주방 87㎡, 다용도실 8㎡, 기타 31.7㎡)
- 4) 위탁기간 : 2027. 1. 1.~2028. 12. 31.(2년)
- 5) 소요예산 : 1,041,645천원(시비)
- 6) 수탁자 선정방식
 -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7명) : 현장평가 및 제안서 평가
- 7)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8) 부서 의견 :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 및 제16조
- 2)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동의안은

- 구미시 노인 건강 증진과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위탁 대상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은 일평균 약 918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로서, 대규모 급식 사무의 특성상 행정의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활용하는 것이 운영의 경제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급식 단가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부담을 1,500원으로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영양 복지를 실현하고 고물가 시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조리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위생 관리와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조리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교육과 시설 소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평가지표가 식단 제시나 일지 작성 등 행정적 절차 이행 위주의 지표에 편중된 측면이 있어 향후 위탁계약 시에는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식사의 맛, 반찬의 종류,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평가 결과도 반영하여 평가의 현실성을 높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 본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
- 수요자 중심의 환경 개선과 세심한 시스템 보완을 통해 노인 복지 시설 이용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함.

6. 소수의견의 요지: 생 략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